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송파구보

송파구 홈페이지 | www.songpa.go.kr

2026. 1. 8.(목) 제2032호



※ 송파구보 발행 안내

· 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구보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에 게재합니다.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송파구 Songpa-gu

발행인 : 송파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02-2147-22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차 례

◉ 고 시

제7호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3
제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가락동 146-6외 1필지) ····· 6
제9호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8
제11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10
제12호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12
제13호 거여동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9

◉ 공 고

제9호 2025년 4분기 송파구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공고 ····· 22
제1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제1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송파구 금고 적용금리 공고 ····· 36
제28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38
제2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40
제30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 44

고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7호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9호(2017. 7. 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115호(2023. 9. 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우리 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잠실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 일대

나. 면 적: 31,961.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잠실우성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 우성4차아파트 관리사무소내(잠실동, 우성아파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5년 12월 31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연면적(㎡)	용 도
30,235.7	9개동	지하4층 지상32층	825	25.03	299.69	7,567.86	155,793.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공동주택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계	59㎡	70㎡	84㎡	102㎡	150㎡	160㎡
계	825	185	118	356	163	2	1
토지등소유자	576	31	56	348	138	2	1
보류시설	7	3	2	1	1	0	0
일반분양	149	80	43	2	24	0	0
임대	93	71	17	5	0	0	0

▸ 근린생활시설(상가)

분양대상	분양면적(㎡)	비 고
일반분양	473.04	
합 계	**473.04**	

▸ 분양용지

구 분	규 모(㎡)	소유자	용 도	필지수	무상양여(㎡)	비 고
1	30,093.91	사업시행자	공동주택 (아파트)	1	-	국민주택규모 주택 포함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 도 폐 지			
종류	규모(㎡)	관리청	종류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도로	925.0	송파구	-		-	-
사회복지시설	800.4	송파구	-		-	-
합계	1,725.4		합계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등

▸ 2027년 7월 이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8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송파구 가락동 146-6번지 외 1필지 대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을「주택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처리하고 동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주택건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종류: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나. 사업명칭: 가락동 LH매입임대주택(청년형) 신축공사

2.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주체: 한국자산신탁(주)

나.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 타워

3. 사업시행지 위치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대지위치: 송파구 가락동 146-6번지 외 1필지

나. 대지면적: 701.00㎡

다.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11층, 연면적 2,271.07㎡

라. 용 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아파트)] 53세대

마. 전용면적: 19.30㎡ 6세대, 21.71㎡ 24세대, 22.79㎡ 18세대
24.23㎡ 5세대

4. 주택건설사업 시행기간: 2026. 03. 31. ~ 2027. 07. 31.

5.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9호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송파구 고시 2017-105호(2017.08.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00호(2021.12.16.)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신천동 17-6번지 일원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원

나. 명 칭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동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7, 9층(방이동, 제이타워)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구역면적(대지면적) : 75,684.5㎡(67,936.1㎡)

나. 부분준공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13개동 1,865세대(임대 19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다. 준공인가 제외부분 : 사업시행인가 조건 중 지하보도 연결통로(송파구고시 제2025-87호(2025.10.10.)) 공사 미완료 부분

라. 준공인가일 : 2025. 12.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1호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송파구 고시 제2017-138호(2017. 9. 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1호(2021. 7. 8.)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우리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나. 명 칭 :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반성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8, 3층 1호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구역면적(대지면적) : 112,558.50㎡

나. 준공인가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23개동 2.678세대(임대주택 3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다. 준공인가 제외부분 : 기반시설(환기구 이설 등) 일부 미완료 부분

라. 준공인가일 : 2025. 12.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2호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우리 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올림픽훼밀리타우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일대

나. 구역 면적: 334.702.0m2

※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향후 변동 가능성 있음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직책	성명	주소
1	추진위원장	이종한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906호
2	감사	권선주	올림픽훼밀리타운 301동 305호
3	감사	박훈수	올림픽훼밀리타운 101동 1401호
4	추진위원	채혜원	올림픽훼밀리타운 102동 203호
5	추진위원	이민혁	올림픽훼밀리타운 102동 1401호
6	추진위원	대오순	올림픽훼밀리타운 103동 401호
7	추진위원	곽도은	올림픽훼밀리타운 103동 601호
8	추진위원	김을자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 501호
9	추진위원	기영숙	올림픽훼밀리타운 104동 1203호
10	추진위원	안명덕	올림픽훼밀리타운 105동 706호
11	추진위원	김유정	올림픽훼밀리타운 105동 1001호
12	추진위원	김화희	올림픽훼밀리타운 105동 1101호
13	추진위원	김경중	올림픽훼밀리타운 107동 103호
14	추진위원	천용홍	올림픽훼밀리타운 107동 104호
15	추진위원	서복순	올림픽훼밀리타운 108동 402호
16	추진위원	문계주	올림픽훼밀리타운 109동 705호
17	추진위원	박동호	올림픽훼밀리타운 110동 201호
18	추진위원	정수만	올림픽훼밀리타운 112동 1202호
19	추진위원	김영전	올림픽훼밀리타운 201동 105호
20	추진위원	조희배	올림픽훼밀리타운 201동 504호
21	추진위원	김상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01동 704호
22	추진위원	강석갑	올림픽훼밀리타운 201동 1005호
23	추진위원	이인애	올림픽훼밀리타운 201동 1206호
24	추진위원	이영숙	올림픽훼밀리타운 202동 601호

연 번	직 책	성 명	주 소
25	추진위원	이진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02동 1306호
26	추진위원	유연성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101호
27	추진위원	전병일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402호
28	추진위원	최금희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406호
29	추진위원	정상국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1003호
30	추진위원	이종혁	올림픽훼밀리타운 203동 1104호
31	추진위원	윤길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04동 406호
32	추진위원	이숙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04동 905호
33	추진위원	이동호	올림픽훼밀리타운 204동 1506호
34	추진위원	김태원	올림픽훼밀리타운 205동 602호
35	추진위원	김준원	올림픽훼밀리타운 205동 1501호
36	추진위원	이병민	올림픽훼밀리타운 205동 1503호
37	추진위원	허지연	올림픽훼밀리타운 206동 403호
38	추진위원	김경숙	올림픽훼밀리타운 206동 803호
39	추진위원	박현숙	올림픽훼밀리타운 207동 203호
40	추진위원	정숙희	올림픽훼밀리타운 207동 406호
41	추진위원	조춘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07동 806호
42	추진위원	허준범	올림픽훼밀리타운 208동 1005호
43	추진위원	김홍구	올림픽훼밀리타운 208동 1204호
44	추진위원	이윤옥	올림픽훼밀리타운 209동 106호
45	추진위원	채을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09동 1006호
46	추진위원	마동민	올림픽훼밀리타운 209동 1501호
47	추진위원	신문식	올림픽훼밀리타운 210동 1502호
48	추진위원	김영완	올림픽훼밀리타운 211동 902호
49	추진위원	강순정	올림픽훼밀리타운 211동 1303호

연 번	직 책	성 명	주 소
50	추진위원	정인실	올림픽훼밀리타운 212동 1403호
51	추진위원	이병렬	올림픽훼밀리타운 213동 401호
52	추진위원	조미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13동 905호
53	추진위원	김경남	올림픽훼밀리타운 214동 1202호
54	추진위원	이수웅	올림픽훼밀리타운 215동 702호
55	추진위원	이진석	올림픽훼밀리타운 215동 1004호
56	추진위원	이치규	올림픽훼밀리타운 215동 1005호
57	추진위원	김선미	올림픽훼밀리타운 215동 1401호
58	추진위원	조병목	올림픽훼밀리타운 215동 1506호
59	추진위원	이효익	올림픽훼밀리타운 216동 203호
60	추진위원	최희진	올림픽훼밀리타운 216동 502호
61	추진위원	김철홍	올림픽훼밀리타운 216동 701호
62	추진위원	이근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16동 1504호
63	추진위원	김주태	올림픽훼밀리타운 217동 101호
64	추진위원	김효진	올림픽훼밀리타운 218동 105호
65	추진위원	김미순	올림픽훼밀리타운 218동 301호
66	추진위원	이내교	올림픽훼밀리타운 219동 805호
67	추진위원	이영지	올림픽훼밀리타운 219동 1403호
68	추진위원	여성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19동 1504호
69	추진위원	최미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20동 101호
70	추진위원	정숙영	올림픽훼밀리타운 220동 604호
71	추진위원	정은주	올림픽훼밀리타운 221동 402호
72	추진위원	최현주	올림픽훼밀리타운 221동 404호
73	추진위원	강현철	올림픽훼밀리타운 221동 702호
74	추진위원	김세훈	올림픽훼밀리타운 221동 802호

연 번	직 책	성 명	주 소
75	추진위원	김경근	올림픽훼밀리타운 222동 102호
76	추진위원	신민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22동 104호
77	추진위원	김광호	올림픽훼밀리타운 223동 606호
78	추진위원	조봉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23동 806호
79	추진위원	김정년	올림픽훼밀리타운 223동 1506호
80	추진위원	양영규	올림픽훼밀리타운 224동 205호
81	추진위원	김병두	올림픽훼밀리타운 224동 606호
82	추진위원	김기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24동 902호
83	추진위원	진은금	올림픽훼밀리타운 224동 1106호
84	추진위원	윤목영	올림픽훼밀리타운 225동 202호
85	추진위원	성윤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25동 704호
86	추진위원	임형구	올림픽훼밀리타운 225동 1205호
87	추진위원	김동헌	올림픽훼밀리타운 226동 204호
88	추진위원	안병훈	올림픽훼밀리타운 226동 406호
89	추진위원	임현기	올림픽훼밀리타운 226동 505호
90	추진위원	배기충	올림픽훼밀리타운 226동 1506호
91	추진위원	장덕봉	올림픽훼밀리타운 227동 604호
92	추진위원	김희경	올림픽훼밀리타운 227동 906호
93	추진위원	허남준	올림픽훼밀리타운 227동 1001호
94	추진위원	정광량	올림픽훼밀리타운 227동 1202호
95	추진위원	이애리	올림픽훼밀리타운 227동 1406호
96	추진위원	최우용	올림픽훼밀리타운 228동 401호
97	추진위원	김민수	올림픽훼밀리타운 229동 603호
98	추진위원	황호춘	올림픽훼밀리타운 230동 402호
99	추진위원	최경훈	올림픽훼밀리타운 230동 1101호

연 번	직 책	성 명	주 소
100	추진위원	장영철	올림픽훼밀리타운 230동 1104호
101	추진위원	오장경	올림픽훼밀리타운 231동 504호
102	추진위원	조평익	올림픽훼밀리타운 231동 802호
103	추진위원	김병찬	올림픽훼밀리타운 231동 1103호
104	추진위원	박수영	올림픽훼밀리타운 231동 1202호
105	추진위원	김정순	올림픽훼밀리타운 232동 105호
106	추진위원	김영자	올림픽훼밀리타운 232동 601호
107	추진위원	오순상	올림픽훼밀리타운 232동 1102호
108	추진위원	허미경	올림픽훼밀리타운 233동 503호
109	추진위원	조성권	올림픽훼밀리타운 233동 1403호
110	추진위원	이성우	올림픽훼밀리타운 234동 101호
111	추진위원	설문우	올림픽훼밀리타운 234동 104호
112	추진위원	이재걸	올림픽훼밀리타운 234동 903호
113	추진위원	최희승	올림픽훼밀리타운 234동 904호
114	추진위원	임성경	올림픽훼밀리타운 302동 902호
115	추진위원	임종권	올림픽훼밀리타운 304동 1105호
116	추진위원	이말선	올림픽훼밀리타운 304동 1303호
117	추진위원	최창열	올림픽훼밀리타운 305동 104호
118	추진위원	정영화	올림픽훼밀리타운 305동 901호
119	추진위원	정길택	올림픽훼밀리타운 306동 1204호
120	추진위원	곽상섭	올림픽훼밀리타운 309동 104호
121	추진위원	남규현	올림픽훼밀리타운 309동 1503호
122	추진위원	부향숙	올림픽훼밀리타운 310동 403호
123	추진위원	손형숙	올림픽훼밀리타운 310동 1404호

3. 토지등소유자의 수: 4,772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함

4.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자: 2025년 12월 24일

5.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13호

거여동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36-49번지 외 1필지상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송파구 거여동 136-49 외 1필지 / 1,131.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 영풍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효원)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3, 2층 (송파

동, 성일빌딩)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3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 5. 12.(최초)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 수	높이(m)	건축물의 용도
1,131.50	52.09	199.97	3,178.29	지하1층 /지상7층	22.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구분	주택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40.31㎡ (A)	40.00㎡ (B,B1)	39.13㎡ (C)	36.29㎡ (D)
계	아파트	1	44	14	12	12	6
조합원	아파트	-	33	13	12	7	1
일반분양	아파트	-	11	1	-	5	5

8.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의제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3호·제12호

10. 변경의 사유 및 내용(변경인가일: 2026. 1. 5.)

– 변경사유: 용역업체 추가 선정 및 계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증가, 현금청산자(공급계약 미체결자)에 따른 비용 반영 등

– 변경내용

· 정비사업비 및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 분양설계, 일반 분양분,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등 관리처분계획

·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1. 기타 관계서류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904)에 비치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현황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우리 구 2025년 4분기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 8. ~ 2026. 3. 31.

2. **공고대상** : 송파구 소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조건 총5,736건(주소, 임대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3. 공고방법 :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4. 대상현황 : 구청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규정 정비 (안 제9조)

– 위촉직·당연직 대상 위원 정비(도서관장: 위촉직 → 당연직)

나. 공공도서관 자료 제적·폐기 규정 정비 (안 제22조)

– 제적·폐기 도서의 기관·단체·개인 대상 무상배부 등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교육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협력과(전화: 2147-2368, e-mail: jeonsoonmok@songp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찬·반 여부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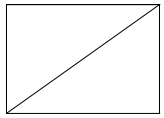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 05552)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교육협력과

– 연락처: Tel. 2147-2360(FAX: 2147-3861)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6. . . (제 회)

심의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협력과장 윤 정 중
제출년월일	2026. .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교육협력과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근거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도서 재활용 방안'을 명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규정 정비 (안 제9조)

– 위촉직·당연직 대상 위원 정비(도서관장: 위촉직 → 당연직)

나. 공공도서관 자료 제적·폐기 규정 정비 (안 제22조)

– 제적·폐기 도서의 기관·단체·개인 대상 무상배부 등 도서 재활용 방안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기획예산과(규제사전심사), 여성보육과(성별영향평가)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별첨

2) 입법예고: 2026. . . ~ . . (20일간)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도서관장,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9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 운영 업무 소관 국장과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도서관 인력 ·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도서관 인력 · 시설 · 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7] 도서관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 · 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 · 이관 ·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ㅏ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차. (생략)

5. ~6. (생략)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나. 수입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작성자: 주 무 관 행정7급 정 지 은
- 검토자: 도서관팀장 행정6급 황 계 숙
- 결재자: 교육협력과장 행정5급 윤 정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호

송파구 금고 적용금리 현황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1. 송파구 금고지정 기본현황

가. 구금고: 우리은행

- 약정기간: 2023. 1. 1. ~ 2026. 12. 31. (4년)

나. 금고의 수: 단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적용금리(2025. 12. 9. 기준)

가. 정기예금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67%	2.77%	3.08%	3.46%

나. 수시입출금식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MMDA
2.63%	2.63%	3.38%

다. 대출

일시차입	지방채
3.65%	3.9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28호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조례발안법」제5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청구요건(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2025. 12. 31. 현재, 단위: 명)

조례의 제정과 개 · 폐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계	내국인	외국인	
559,063	558,000	1,063	**5,591명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내 국 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송파구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2025년 12월 31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송파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자치행정과(02-2147-2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2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및 송파구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 **송파구청장**

(2025. 12. 31. 현재, 단위: 명)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계	내국인	외국인	**82,987**
553,244	552,181	1,063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송파구	풍 납 1 동	9,915	1,488
	풍 납 2 동	20,031	3,005
	거 여 1 동	10,671	1,601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송파구	거 여 2 동	20,029	3,005
	마 천 1 동	13,661	2,050
	마 천 2 동	15,696	2,355
	방 이 1 동	12,829	1,925
	방 이 2 동	24,532	3,680
	오 륜 동	14,147	2,123
	오 금 동	32,456	4,869
	송 파 1 동	21,151	3,173
	송 파 2 동	16,391	2,459
	석 촌 동	27,877	4,182
	삼 전 동	26,031	3,905
	가 락 본 동	22,083	3,313
	가 락 1 동	21,354	3,204
	가 락 2 동	24,170	3,626
	문 정 1 동	17,436	2,616
	문 정 2 동	26,059	3,909
	장 지 동	26,396	3,960
	위 례 동	33,217	4,983
	잠 실 본 동	25,272	3,791
	잠 실 2 동	26,297	3,945
	잠 실 3 동	27,443	4,117
	잠 실 4 동	16,517	2,478
	잠 실 6 동	13,531	2,030
	잠 실 7 동	8,052	1,208

○ 송파구 지방의원

※ 각 동별 서명인수 – 선거구안의 동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3분의 1 이상의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 선거구안의 동의 수가 2개인 경우, 각각 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수

(2025. 12. 31. 현재, 단위: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송파구 가선거구		**59,994**	**11,999**
동 명	풍납1동	9,915	600
	풍납2동	20,031	600
	잠실4동	16,517	600
	잠실6동	13,531	600
송파구 나선거구		**38,679**	**7,736**
동 명	방이2동	24,532	387
	오 륜 동	14,147	387
송파구 다선거구		**50,371**	**10,075**
동 명	방이1동	12,829	504
	송파1동	21,151	504
	송파2동	16,391	504
송파구 라선거구		**75,290**	**15,058**
동 명	석촌동	27,877	753
	가락1동	21,354	753
	문정2동	26,059	753
송파구 마선거구		**59,621**	**11,925**
동 명	잠실본동	25,272	597
	잠실2동	26,297	597
	잠실7동	8,052	597
송파구 바선거구		**53,474**	**10,695**
동 명	삼전동	26,031	535
	잠실3동	27,443	535
송파구 사선거구		**40,028**	**8,006**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동 명	거여1동	10,671	401
	마천1동	13,661	401
	마천2동	15,696	401
송파구 아선거구		**79,642**	**15,929**
동 명	거여2동	20,029	797
	장지동	26,396	797
	위례동	33,217	797
송파구 자선거구		**54,539**	**10,908**
동 명	오금동	32,456	546
	가락본동	22,083	546
송파구 차선거구		**41,606**	**8,322**
동 명	가락2동	24,170	417
	문정1동	17,436	417

◈ 내 국 인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송파구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외 국 인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송파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외국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02-2147-2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30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주민투표법」제5조 및 제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2025. 12. 31. 현재, 단위: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계	내국인	외국인	
559,063	558,000	1,063	**39,934명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 내 국인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송파구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 **외 국 인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추고 송파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자치행정과 (02-2147-2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